

###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이 협정 제5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에 적격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 제1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CIF”라 함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화물비 및 보험료를 포함한다.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상품”에는 그것이 비록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써 추후 사용될 것이라 해도, 완전획득 또는 생산될 수 있는 재료 또는 생산품이 포함된다. 이 부속서의 목적상, “상품”이란 용어와 “생산품”이란 용어는 상호 교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라 함은 발효되고 그 후 개정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률주석에 정의된 통일상품명 및 코드 체계의 용어체계를 말한다.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종류 및 상업적 가치가 같은 재료로서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재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떤 표지에 의하여서도 서로 구별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재료”에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부분품, 하위 조립품이 포함된다.

“비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라 함은 이 협정하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에 반영된 대로 원산지 상품에 부여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 함은 재료가 세번의 변경 또는 특정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특정한 역내부가가치 기준 또는 이러한 기준들의 결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특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운송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라 함은 그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또는 재료와는 구별된다,

“생산”이라 함은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제3국”이라 함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말한다.

## 제2조 원산지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제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2. 제7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은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 제3조

####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2조 제1항 가호의 의미 내에서 다음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

나.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규정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라.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 수렵, 텃사냥,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마. 당사국 영역 내에서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취득된 상품으로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다른 자연 발생 물질

바.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취득된 어로 생산품이거나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취득된 다른 어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탐사할<sup>1)</sup> 권리를 국제법<sup>2)</sup>상 가져야 한다.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취득된 어로 생산품 및 그 밖의 수산물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선상공장에서 전항에 규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그리고/또는 만들어진 상품

---

1) 각 당사국들은 어로 생산품 및 다른 어로 생산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제3조 바호의 권리는 어느 당사국과 그 연안국 정부간 또는 적법하게 권한받은 사적단체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다른 약정에서 비롯되는 연안국의 어로자원 접근권을 포함한다.

2) 제3조 바호의 "국제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같이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을 말한다.

자.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되어야 한다.

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카.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1)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한다.

타. 가호 내지 카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만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 제4조

#####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제2조1항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 (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RVC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sup>3)</sup>.

가. 집적법

$$RVC = \frac{VOM}{FOB} \times 100\%$$

3) 당사국들에게 RVC의 계산법을 채택함에 있어 그것이 집적법이던 공제법이던지 융통성이 부여된다. 투명성, 일관성 및 확실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하나의 방법을 고수한다. 계산방식의 어떠한 변화도 새로운 방식의 채택하기 적어도 6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다. 수입 당사국에 의한 RVC 검증은 수출 당사국이 사용한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VOM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  
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한다.

나. 공제법

$$\text{RVC} = \frac{\text{FOB} - \text{VNM}}{\text{FOB}} \times 100\%$$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  
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  
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

#### 제5조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2조의 목적상, 부록 2에서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은, 상품의 작업 또는 공정이 수행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제6조

##### 특정상품의 취급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특정상품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의 영역 밖의 지역에서, (즉, 공업지구)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그 생산공정 및 작업이 이루어져 다시 재수입된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  
로 간주된다.

#### 제7조

##### 누적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

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제8조 불인정 공정

1. 이 부속서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결합으로만 수행된 경우, 그 상품은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운송 혹은 저장 중에 상품을 우수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합

다.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단순한<sup>4)</sup> 세척, 세정, 제거

라. 단순한<sup>4)</sup> 도장 및 광택 공정

마.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바.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

사. 단순한<sup>4)</sup> 껍질 벗기기, 씨제거, 또는 탈각

아. 연마, 단순한<sup>4)</sup>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자. 채질, 선별, 구분, 등급 분류, 등급화, 매칭

차.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모든 다른 단순한 포장 공정

카. 표식, 라벨, 로고 및,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지와 같은 것의 첨부 또

---

4. "단순한"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는 인쇄

타. 다른 종류간이건 아니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sup>5</sup>

파.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 또는 생산품을 부품으로 해체하기

하. 단순한<sup>4</sup> 실험 또는 측정

거. 동물의 도축<sup>6</sup>

2. 어느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수행된 공정이 제1항에 규정된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되었을 때 처음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 제9조 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5. "단순한 혼합"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도축"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이에 연이어 이루어진 저장과 운송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과정을 의미한다.

## 제10조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특정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부속서상 규정된 모든 다른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RVC 요구조건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된다.

## 제11조 포장재의 취급

1. 가. 상품이 제4조에 규정된 RVC 기준을 따르는 경우, 소매용 포장재의 가격은 그 포장재가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고려된다.

나. 가호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소매용 포장 재료는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될 때에는,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재료가 그 상품의 세 번 변경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상품 수송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다른 안내물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다른 안내물이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상품과 함께 관세가 징수되어야 한다.

## 제13조

###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원산지는 판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공구, 틀 및 금형

다. 장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건물 및 장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 제14조

###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

1. 상품의 원산지 확정의 목적상, 그 상품이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혼합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하여 제조된 때,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는 수출국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거나 실행되는 재고관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다.
2. 재고관리 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은 그 회계 연도 동안 계속 사용된다.

## 제15조 원산지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제16조 협의, 검토 및 수정

1.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규정들이 이 부속서의 정신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 통일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운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2. 이 부속서는 필요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 및 수정될 수 있고 기본협정 제5.3조에 의하여 설치된 이행위원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검토 및 수정될 수 있다.

## 제17조 제도규정

기본협정 제5.3조의 따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원산지규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이 부속서 및 부록 1에 규정된 통관절차 및 원산지 일반 규정의 감독과 이행에 책임지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제18조 분쟁해결

1. 원산지 결정, 어떤 상품의 분류 또는 이 부속서 및 부록 1의 이행과 관련한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계정부 당국의 차이의 해결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한다. 그리고 결과는 정보 교환 차원에서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협의를 통해 차이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당사국은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 부록1

###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운영절차 규정이 준수된다.

#### 정의

##### 제1조

이 부록의 목적상:

“연결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관세당국”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관세법령<sup>1)</sup>의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수출자”라 함은 물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물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수입자”라 함은 물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물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발급기관”이라 함은 이 부록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있는 당국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부속서 3의 제1조에 규정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여야 한다.

#### 발급기관

##### 제2조

---

1)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시행 및 집행되는 그러한 법령으로서, 물품의 수입, 수출 및 경유와 관련하여 그것이 각 당사국 관세당국의 경계를 지나는 통제항목의 이동에 관한 관세, 부과금 그리고 그 밖의 세금, 금지, 제한 및 통제조치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1.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3조

원산지 지위의 결정 목적상, 발급기관은 당사국의 개별 국내법령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제4조

1.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검사결과는, 정기적 또는 적당한 시기에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후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수출전 검사는 그 성질상 원산지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산자/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물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부합되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나. 물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

다.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그리고

라.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물품과 일치한다는 사실

4.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에 다수 품목을 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각 품목은 개별적으로 원산지 자격이 갖추어야 한다.

## 제5조

1.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별첨 AK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2.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부분의 색상은 당사국 상호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 제출용으로 수입자에게 원본을 전송하여야 한다.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제2 부분을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는 제3 부분을 보관하여야 한다.

5. 발급기관은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생산자/수출자 및 품명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록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원산지증명서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반려되는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의 4번란 표기하고,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특혜관세대우 배제의 근거는 적법하게 발급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7.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가 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하고 특혜관

세대우를 회복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이 작성한 해명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수입 당사국이 제기한 특혜관세대우 배제의 사유에 대한 해명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 제6조

원산지증명서상의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경시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변경은 발급기관이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인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줄을 긋고 지운다.

##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3. 일방 당사국의 요청시 당사국은 본조의 규정 및 그 이행을 검토하고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12번 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 제출

## 제9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1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우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한다.

3 어느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 제1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나.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만, 그 수입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거나 마련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1회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2조

1.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절차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2.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상에 신고된 다수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발생한 문제로 나머지 품목의 특혜관세대우 적용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1항 다호는 문제되는 당해 품목에 적용될 수 있다.

## 기록보관 의무

## 제13조

1.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시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공무원이 제공하여야 한다.
5. 관련 당사국간에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검증

### 제14조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sup>2)</sup>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sup>3)</sup>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가. 사후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검증을 위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시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동봉하며 그 이유와 동 원산지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

2. 한국의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된 발급기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원산지 검증 목적상, 그 관세법령에 따른 관세당국을 말한다.

3. 6월 이내의 기간과 관련하여,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일 전후 또는 그 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일 사이의 6월의 기간을 선정할 수 있다.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물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후 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수행에 앞서,

가. 수입 당사국은 현지조사를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1)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

(2)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기관

(3)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세관당국

(4)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자

나. 가호에 규정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하여야 한다.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이름

(2)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의 이름

(3) 현지조사 방문예정일

(4) 현지조사 대상물품을 포함한 방문예정 현지조사의 범위

(5)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다. 수입 당사국은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상의 현지조사 대상 물품의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마. 통보를 받은 발급기관은 예정된 현지조사를 연기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현지조사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3.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 및 관련 발급기관에 대상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보류되었던 특혜관세대우는 제3항에 규정된,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결정서에 따라 재개된다.

5.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물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물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물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로부터 의견/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실제 방문과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제3항에 규정된 결정 및 그 결과의 발급기관 통보를 포함한 현지조사 절차는 제2조에 의하여 현지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최장 6월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검증과정이 수행되는 동안, 제14조 제1항 다호가 적용된다.

## 제16조

1. 당사국은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정보제공자의 경쟁적 지위를 침해하는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의 국내법령 및 협정에 따라 비밀정보는 원산지 결정의 운영 및 집행 목적으로만 한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 공개될 수 있다.

## 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 제17조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 특혜

## 제18조

특정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목적지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도착전 또는 도착후에 변경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물품이 특정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로 이미 수입된 경우에도, 그러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과 함께 특혜관세 대우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배서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운송도중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발급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신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라.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제20조

1. 부속서 3 제9조에 불구하고,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송되고 전시기간 중 또는 전시후에 일방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규정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하여야 한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발송하고, 그 물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나. 수출자가 수입 당사국의 화주에게 그 물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한 사실

다. 물품이 전시회 기간중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발송된 상태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발송한 사실

2.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시회의 명칭 및 장소가 표시되어야 하여야 한다. 물품의 확인 및 그 전시 상태에 대한 증빙으로, 전시회를 개최한 국가의 관련 정부 당국

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19조 라호에 규정된 증빙서류와 함께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은 전시물품이 전기기간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외국물품 판매목적의 모든 무역,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전람회, 또는 상점내 또는 사업장내 전시에 적용된다.

## 제21조

1.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정 행위에 대한 조치

### 제22조

1.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정부당국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당사국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세 연락창구

### 제23조

1. 각 당사국은 이 부록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연락창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국의 연락창구에서 부속서 3 관련 문제를 타방 당사국의 연락창구에 제기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조사하고, 합리적 기간내에 조사결과 및 해결책을 회신할 자국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연락창구는 이 부속서 하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본(제2사본/제3사본)

<p>1. 송하인(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p>			<p>참조 번호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간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서식 AK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 참조</p>		
<p>2. 수하인(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p>			<p>4. 담당자란</p> <p><input type="checkbox"/>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에 의한 특혜대우</p> <p><input type="checkbox"/> 특혜대우 비부여 (사유 기재 요)</p> <p>.....                      수입국의 권한있는 서명자의 서명</p>		
<p>3. 운송수단 및 경로 (아는 범위까지 기재)</p> <p>출항일</p> <p>선명/편명</p> <p>적출항</p>					
5. 연번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의HS 번호 포함)	8. 원산지 기준 (뒷면 참조)	9.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및 가격(FOB)	10. 송장번호 및 일자
<p>11. 수출자 신고</p> <p>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이며 모든 물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                      (국가)</p> <p>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수입국)</p> <p>.....                      장소,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p>			<p>12. 증명</p> <p>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p> <p>.....                      장소, 날짜, 서명 및 증명기관의 관인</p>		
<p>13.</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제 3 국 송장      <input type="checkbox"/> 전    시      <input type="checkbox"/> 연결 원산지 증명서</p>					

뒷면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 |           |         |       |
|-----------|---------|-------|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 대한민국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 미얀마       | 필리핀     | 싱가포르  |
| 태국        | 베트남 이다. |       |

2. 조건 : AKFTA의 특혜관세를 누리려면 상기 어느 당사국에 송부된 물품은 ,

- (i) 목적국의 양허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 (ii) AKFTA의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에 따른 운송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iii) AK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 충족 물품에 대해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이 서식 제 8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서식 제11란의 최초 국가내 생산 또는 제조환경	제8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WO"
(나) AK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4.1항을 충족하는 물품	"CTH" or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세번변경 Tariff Classification	"CTC"
-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y	"WO-AK"
- 역내부가가치 (RVC)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 예 . "RVC 45%"
- 역내부가가치 + 세번변경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결합규정 : 예, "CTH + RVC 40%"
- 특정 공정	- 특정 공정
(마)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	"제6조 "

- 4. 각 품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발송하는 모든 물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크기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도 그러하다.
- 5. 품명 : 물품의 명세는 그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물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해야 한다. 제조자 이름, 상표도 특정되어야 한다.
- 6. 통일부호체계 번호 : 통일부호체계 번호는 수입국의 번호를 말한다.
- 7. 수출자 :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 8. 담당자 기재란 :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 표시한다.
- 9. 제3국 송장 :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제3국 송장" 란에 (✓) 로 표시한다. 그리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는 제7란에 기재한다.
- 10. 전시물품 : 원산지규정을 위한 증명 운영절차 제20조에 따라, 제3국에서 전시를 위해 수출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송되어, 전시 중 또는 전시 후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을 위해 팔린 경우, "전시물품"란에 (✓)로 표시된다.

11. 연결 원산지 증명서 :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규정을 위한 증명 운용절차 제7조2에 따라 “연결 원산지 증명서” 란에 (√)로 표시한다.